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행하는 진품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진품증명서 발행 요구 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나.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다.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진흥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 서비스업자”란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진품증명서”란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본정보에 포함된 사항을 보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 ①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거짓으로 진품증명서를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미술품을 구매한 자의 요구에 따라 발행하는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진품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작품의 기본정보

가. 작가명

나. 작품명

다. 제작연도

라. 매체 및 기법(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추가)

마. 작품규격

바. 작품 이미지

2. 보증내용

3. 구매일자, 구매처

4. 발행일자

5. 발행주체의 명칭 및 서명·날인(단, 발행주체가 미술 서비스업자인 경우, 작가의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6. 발행주체의 주소 및 연락처

7. 문서의 고유번호

④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진품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작품의 소장 이력, 경매 출품 이력, 출판 기록, 전시 이력 등 과거 이력

2. 작품 내 서명의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

3. 구매자 정보 및 구매가격

제4조(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 법 제16조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가 발급한 감정서

2. 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관리하는 미술품 유통 내역으로서, 작가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작품이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단, 작가 서명·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품증명서 서식

고유번호: (발급주체명) 2026-000000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깊이 순서로 기재)

3. 작품의 과거 이력(선택사항)

(작품의 소장 이력, 경매 출품 이력, 출판 기록, 전시 이력 등)

4. 작품 세부사항(선택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사항)

5. 구매 정보

구 매 일 자	
구 매 처	
구 매 자 정 보	(선택사항)
구 매 가 격	(선택사항)

[작가명/사업자명]은/는 「미술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에 기재된 정보에 포함된 사항을 보증하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작가] _____ (서명 또는 인)

[미술 서비스업자] _____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연락처

※ 보증이 제한되는 조건이나 범위,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의 조치 사항 등 보증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된 약관·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본 증서를 교부하면서 구매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